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5호, 2022. 7. 5.,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3.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지원 신청 직전 월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칙 <제475호, 2022. 7. 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고 내용	회사명(한글)			업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상시 종업원 수			명 (전문인력 보유: 명)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연간 매출액 백만원 (전문 분야: 백만원)	
	사업자 형태 [] 개인 [] 법인 [] 기타 ()				
	전문 분야 [] 아래 해당 번호를 기입 1. 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2. 산업데이터 거래행위의 알선 및 이를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하는 사업 3.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사업 4.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장비·소프트웨어 등 제공 사업 5.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대행하여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주요 사업 실적	과제명	발주처	수행기간	용역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〇〇 협회 귀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운영예정일			

사무소 소재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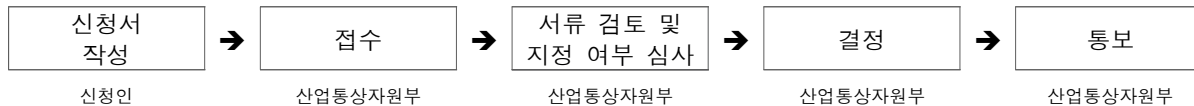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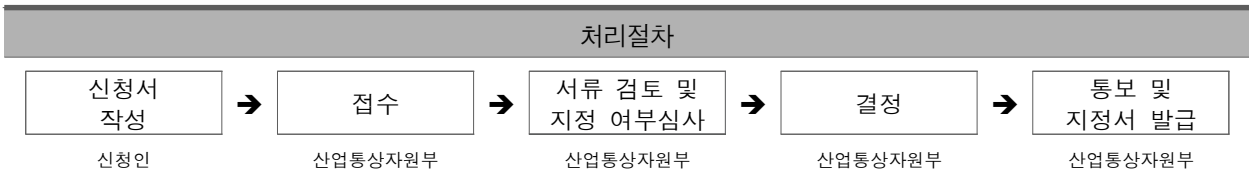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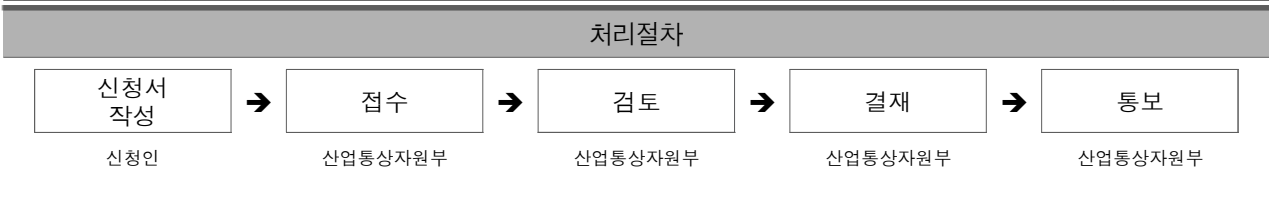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증명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인가번호 제 호

협회 설립인가서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 협회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